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이란 무엇일까요?

이 명령은 어떤 사람에 대한 총기, 탄약 또는 탄창 (탄약이 들어가는 모든 기기)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입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총기, 탄약 및 탄창을 제출해야 합니다.

총기 폭력 금지 명령 신청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송달된 문서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법원 심리 통지서(양식 GV-109)에 법원 출두일이 적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총기, 탄약 또는 탄창의 소지를 금지하고, 현재 소유 또는 소지한 모든 총기, 탄약 또는 탄창을 제출, 매각 또는 보관할 것을 요구하는 임시 총기 폭력 금지 명령(양식 GV-110)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일까지 이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누가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은 반드시 다음 사람에 의해서 제기되었어야 합니다.

- 법 집행관 또는 법 집행 기관,
- 고용주,
- 귀하와 실제적이고 "정기적인 관계"가 있으며 적어도 1년 이상 함께 일한 동료.
- 귀하가 최근 6개월 동안 다녔던 학교의 직원 또는 교사, 또는
- 귀하의 직계가족.

본 법에서 직계 가족 구성원은 혈연이 아닌 사람들을 포함하도록 정의됩니다. 직계 가족 구성원은 귀하의 (1) 배우자 또는 동거인; (2) 양부모나 양조부모를 포함하여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그리고 손자 손녀 및 그들의 배우자; (3) 배우자의 부모, 자녀 (귀하의 의붓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그리고 손자 손녀; 그리고 (4) 해당 가구에 정기적으로 거주하거나 지난 6개월 이내에 해당 가구에 정기적으로 거주했던 사람을 포함합니다.

임시 금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이 귀하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징역형 및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총기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명령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고가 신청한 명령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리일 전에 양식 GV-120 (총기 폭력 금지 명령 신청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이 양식은 법률 문서 출판업체나 www.courts.ca.gov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역 법원 청사나 카운티 법원 도서관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에 반대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청서에서 요청한 기간 (1년에서 5년 사이) 동안 총기류에 대한 접근 및 총기, 탄약 및 탄창을 소유, 소지 및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총기 폭력 금지 명령 및 총기 양도 (양식 GV-125)을 기입하고 및 항목 4a의 확인란에 확인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문서를 법원 서기에게 제출한 후, 해당 요청을 신청한 사람 또는 법 집행 기관에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법원은 심리 전에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을 내리고 심리를 일정에서 삭제할 것입니다. 귀하는 법원 출두 날짜에 갈 필요가 없으며, 법원은 명령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할 것입니다.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법원에 확인하십시오.

신청료를 내야 할까요?

아니오.

답변서의 사본을 상대측에 송달해야 할까요?

예. 18세 이상의 사람—귀하는 제외—이 작성된 양식 GV-120의 사본을 명령을 신청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변호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우편 송달"이라고 합니다.)

우편으로 양식을 송달한 사람은 양식 GV-250 (우편 송달 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우편 송달을 한 사람이 원본에 서명해야 합니다. 작성 완료된 양식을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거나 심리에 출두할 때 가져가십시오.

본인에게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법원이 심리일 전에 임시 금지 명령을 발부했을 경우, 이 명령은 귀하의 심리일까지 효력을 지속합니다. 심리일에 법원은 1년에서 5년 동안 유효한 총기 금지 명령의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법원 심리에 출두해야 할까요?

예. 귀하는 양식 GV-109 (법원 심리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에 법원에 출두해야 합니다. 심리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판사가 귀하의 진술을 듣지 않고 금지 명령을 1년에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GV-109 Notice of Court Hearing

Clerk stamps date here when form is filed.

1 **Petitioner**

a. Your Full Name: _____

I am: A family member of the Respondent
 A law enforcement officer employed by (name of law enforcement agency): _____

b. Your Lawyer (if you have one for this case):
 Name: _____ State Bar No.: _____
 Firm Name: _____

c. Your Address (If you have a lawyer, give your lawyer's information. If you do not have a lawyer and want to keep your home address private, you may give a different mailing address instead. You do not have to give telephone, fax, or e-mail. Law enforcement officer, give agency information.)
 Address: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Telephone: _____ Fax: _____
 E-Mail Address: _____

Fill in court name and street address: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_____

Court fills in case number when form is filed.
 Case Number: _____

2 **Respondent**
 Full Name: _____

3 **Hearing**
The court will complete the rest of this form.
 Name and address of court if different from above: _____
 Date: _____ Time: _____
 Dept.: _____ Room: _____

4 **Temporary Gun Violence Restraining Order** (Any order granted is on Form GV-110, served with this notice.)
 a. A Temporary Gun Violence Restraining Order as requested in Form GV-100, Petition for Gun Violence Restraining Order, is (check only one box below):
 (1) GRANTED until the court hearing.
 (2) DENIED until the court hearing. (Specify reasons for denial in b, below.)

Judicial Branch of California, www.courts.ca.gov
 Rev. January 1, 2010, Mandatory Form
 Penal Code § 10100 et seq.
 Approved by SCSJ

Notice of Court Hearing (Gun Violence Prevention)

GV-109, Page 1 of 3

금지 명령을 신청한 사람을 법원 심리에서 만나게 될까요?

명령을 요청하는 사람이 심리에 출두할 것이라고 가정하십시오. 판사 또는 상대측의 변호인이 진술을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측에게 말을 걸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법원 심리에 증인을 대동할 수 있을까요?

예. 귀하는 귀하의 사건을 뒷받침하는 증인 또는 문서를 심리에 대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할 경우, 증인이 보고 들은 것을 적은 서면 진술서도 가져와야 합니다. 증인의 진술서는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선서 하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식 MC-030 (진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자와 합의하여 명령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명령서가 발부된 후에는 판사만이 명령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취소하려면 법원에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어를 못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하가 양식을 제출할 때, 법원 서기 또는 **자조 센터**에 통역사가 무료로 제공되는지 문의하십시오. 무료 통역사 제공이 안 되면, 유료 통역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재판일에 통역사를 대동할 수 없다면, 18세 이상의 사람에게 귀하의 진술을 통역하도록 부탁해야 합니다.

청각 장애인이거나 잘 들리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가 열리기 최소한 5일 전에 신청하면 보청 시스템, 컴퓨터 보조 실시간 캡션 또는 수화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 및 답변 (양식 MC-410)을 입수하려면 법원 서기실에 연락하거나 www.courts.ca.gov/forms 를 방문하십시오. (민법 § 54.8)

귀하의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이 연락하십시오.

[지역 정보가 삽입될 수 있습니다.]